

수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713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7134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2401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배

변론 종결 2023. 4. 5.

판결 선고 2023. 4. 1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2401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1. 5.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1. 5. 4. 접수 제321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B이 항소를 취하하여 분리 ·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7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기존에 물품거래관계에 있던 C가 단기 대여를 요청하여 2021. 5. 3. 26,000,000원, 2021. 5. 4. 30,500,000원 합계 56,5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과 13,500,000원의 기존의

외상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 유통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유통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다룬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4호증, 을가 5, 7, 9, 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물품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2021. 5. 3. 및 같은 달 4. C로부터 토지 매수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2021. 5. 4. C의 계좌에 J 명의로 10,000,000원, K 명의로 30,000,000원, 피고 명의로 500,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당시 C는 피고에 대하여 외상대금 채무 13,5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C는 2021. 5. 4.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22. 5. 4.로 정하여 차용하고, 매월 4일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을가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기존에 대여하였던 26,000,000원을 변제받았다가 그 직후 C에게 다시 변제받은 액수보다 많은 30,50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C로부터 기존의 외상대금 13,500,000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③ 피고는 C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 유통을 위하여 부득이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존의 외상대금 및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장래의 물품공급에 대한 담보로 위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이후 실제로 계속적 물품공급의 실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C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로서 여전히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현지

판사이재욱

판사정하정

별지